

서울시보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3156호 2013. 01. 28.(월)

희망서울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서울광장 스케이트장

기관의 장		공							
선			람						
람									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입법예고]

제2013-14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2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-142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1월 28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시립미술관 북서울 분관의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서울시 총정원을 16,645명에서 16,830명으로 총 185명을 증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립미술관 북서울 분관 개관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시립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40명과 연구직 1명을 각각 증원함

나.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소방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 등과 관련하여 소방직 144명을 증원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[참조 :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 1가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 : 2133-6752, FAX : 2133-0822, E-mail : sola20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